

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AI 및 구제역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AI 및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2017년 특정부동산 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

5. 검토의견

○ 위 도세 감면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AI(2016. 11. 16.이후 발생) 및 구제역(2017. 2. 5.

이후 발생)으로 가축살처분 피해 입은 농가의 축사에 부과되는 2017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. 끝.